

선박재활용법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」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선박소유자에게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고 검인을 받도록 하고, 정기적으로 선박의 유해물질 사용 및 관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며,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준비검사를 받고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(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).
-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, 해양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 선박의 재활용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).
-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0조).

II. 검토의견

1. 현장조사의 내용 명확화(안 제15조제4항)

- 안 제15조제4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갱신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시설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그런데 안 제15조제4항에 따른 ‘현장조사’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행정력을 행사하는 ‘행정조사’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, 해당 현장조사가 선박재활용업자 등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음.
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5조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¹⁾ 제정안은 현장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, 안 제15조제4항은 현장조사의 주체, 조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- 이에 안 제15조제4항이 현장조사의 주체, 조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.

1)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5조(행정조사의 근거)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안 제15조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5조(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)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<u>인증서의 갱신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</u>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<u>시정에</u>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제15조(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) ④ ----- <u>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</u> <u>갱신을 위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상태</u> <u>확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</u> <u>조사 결과</u> ----- ----- <u>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시</u> <u>정에</u> -----

2. 결과 통보 기산점 명확화(안 제21조제7항)

- 안 제21조제7항은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시정명령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그러나 안 제21조제7항은 통보기한을 ‘60일 이내’로 규정하고 있는데, 그 기산점이 ‘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’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통보기한을 두어 신속한 결과 통보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, 결과 통보의 기산점을 ‘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’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제21조제7항에 대한 수정의견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1조(항만국통제)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 등의 위법·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<u>60영업일 이내</u> 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영업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1조(항만국통제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

3. 검사 등 대항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필요 (안 제29조 신설)

- 안 제24조제1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유해물질목록의 검인, 안 제9조, 제10조, 제13조에 따른 검사,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및 국제선박 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그런데 안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는 「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」에 따라 국제적 효력이 있는 업무라는 점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이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안 제29조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, 대항기관의 임직원에게 공무원과

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여 그 업무수행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「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」 역시 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 제 규정을 두고 있음.²⁾

- 따라서 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성격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, 수뢰죄 등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,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³⁾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‘공무원 의제’ 규정을 도입하는 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-
- 2) 「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」 제30조(검사 등의 대행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
 - 1의2.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
 - 1의3.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
 2.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,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시
 3.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
 4.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정,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
- 제41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3) 「형법」 제129조(수뢰, 사전수뢰)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-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- 제130조(제삼자뇌물제공)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- 제131조(수뢰후부정처사, 사후수뢰)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-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-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
- 제132조(알선수뢰)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
<대행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신 설>	제29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-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「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」의 표현과 일치시키고,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문언의 표현을 수정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